

의안번호	2218094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2.
추 계 번호	26B1966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(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) 신설	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·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(이하 “사육교육”이라 함)을 이수하여야 함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·재량 규정
		1.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2. 수의사,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자 3. 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	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(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) 신설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사육교육 이수(안 제16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¹⁾을 취득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반려동물의 적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정한 사육·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(이하 “사육교육”이라 함)을 이수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육교육 실시 또는 위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사육교육의 실시·위탁 및 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²⁾하고 있고,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사육경력 및 숙련도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육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사육교육의 대상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고, 사육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 교육, 인식개선,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갈등 완화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[표 1]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 현황

		(단위: 백만원)
사업명	사업 내용	2026 예산
동물복지·안전관리 강화 지원 (3741-338) 동물복지 인식개선	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에 맞추어 동물학대 방지, 돌봄의무 강화, 개물림 사고 예방 등 국가 차원의 교육·홍보 등 인식개선 확대	2,616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8. "등록대상동물"이란 동물의 보호, 유실·유기(遺棄) 방지, 질병의 관리,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

제4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
2.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

2) 안 제16조의2(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)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육교육의 실시·위탁 및 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